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17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김남근 · 강준현 · 김문수
김승원 · 김 현 · 김현정
남인순 · 박 정 · 박정현
박지원 · 박홍근 · 박홍배
서영교 · 손명수 · 송옥주
송재봉 · 오기형 · 이강일
이용우 · 이재강 · 이정현
이주희 · 이춘석 · 임미애
진성준 · 최혁진 · 허 영
의원(27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봉제산업은 동대문시장의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음.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투자 여력 부족, 그리고 인터넷 쇼핑 등의 발달로 인한 집적이익 경쟁력 상실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봉제산업의 쇠퇴는 도시 내 전반적인 중·소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 제도는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책이 미비하며 종합적 지원도 전무함. 이로 인해 인력 기반 재건과 집적지 유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 대응이 부족하므로, 특별법 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 패션봉제산업, 패션봉제사업자, 패션봉제사업체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의무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패션봉제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현황 관리를 위해 패션 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금융·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전수, 창업, 시설·유통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봉제”란 소프트웨어·기계·장비 또는 수작업으로 도안·재단·봉제하여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패션봉제산업”이란 제1호의 활동과 관련된 제품의 기획·제조·유통·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패션봉제사업자”란 패션봉제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패션봉제사업체”란 패션봉제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패션봉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패션봉제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패션봉제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패션봉제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패션봉제산업 기술의 전수에 관한 사항
5. 패션봉제사업자 간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패션봉제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공동작업장 구축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현대화 및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패션봉제산업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9. 패션봉제산업의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패션봉제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패션봉제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지원

제8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의 전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패션봉제산업 관련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패션봉제산업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창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

교육·상담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사업체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사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사업자가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2. 공동작업장·공용재단실 등 공동생산시설의 설치·운영
3. 구매·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구축
4.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및 홍보
5.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6. 원단폐기물 공동 처리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사업

제13조(판로 확대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패션봉제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온라인 유통플랫폼 연계 및 공공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판로 확대 사업의 지원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금융 및 세제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패션봉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